

【 6 】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

제출일시 : 1993. 5. 7.

제출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청소년육성법이 1992. 12. 31로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1992. 12. 31 법률 제44778호로
제정되어 1993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여러사항을 성과적으로
운영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1. 위원회 구성 (인원 및 위원의 자격 : 제2조 1항, 3항)
2. 위원회 기능 (제3조)
 - 가.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계획수립
 - 나.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
 - 다.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
3. 위원의 임기 (공무원이 아닌자 3년, 연임가능 : 제5조)
4. 간사 (인원 및 자격 : 제7조)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
된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
한다.

제2조 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으로

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.
- ③ 위원회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,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- ①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
- ②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
- ③ 청소년 수련시설 (이하 "수련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 관리 및 지원
- ④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
- ⑤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

제4조 (위원장의 직무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 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위원의 임기)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 (회의 및 의사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-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.

제8조 (수당등) 위원회 위원중 양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

수 있다.

제9조 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(조례 제1298호 1989.12.21)는 이를 폐지한다.

【 7 】 양주군건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3. 4. 22

제출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을 전면 개정하여 '92.6.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 건축법령의 취지에 맞게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.

주요골자

○ 건축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3항에 의한 건축위원회 및 30개 사항

가. 건축위원회 ("안" 제3조)

- .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- . 기타 법. 영. 시행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
- . 공동주택 (다세대 주택을 제외한다)
- . 위원회 구성 : 15인 이내 군수가 임명